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5,837,755	19,975,133
일반회계		551,669,747	16,550,092
특별회계		114,168,008	3,425,040
	공기업특별회계	93,847,626	2,815,4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749,491	652,4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098,135	2,162,944
	기타특별회계	20,320,382	609,61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25,305	33,7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8,599	15,858
	주차장특별회계	3,891,630	116,749
	수질개선특별회계	14,774,848	443,24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55,21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